

開發年代의 稅制改革과 附加價值稅의 導入經緯

車 輛 權*

.....<目 次>.....

- I. 머리말
- II. 開發年代의 稅制改革
- III. 附加價值稅의 導入經緯

I. 머리말

1960~70년대에 우리 經濟가 고도의 經濟成長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가지 要因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으나 稅制를 통한 自體財源의 조달능력이 크게 확대된 것도 매우 중요한 要因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먼저 開發年代의 주요 稅制改革을 개관하고 稅制의 近代化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附加價值稅의 導入經緯를 政治經濟的인 측면에서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II. 開發年代의 稅制改革

1. 開發年代의 稅制改革 概觀

開發年代라고 불리우고 있는 1960~70년대에 실시된 주요한 稅制改革은 모두 官僚集團이나 學界 및 研究機關 또는 企業集團에 의하여 시초의 구상이 제시되고, 稅制改革案의 작성 과정에서는 民間人으로 구성되는 「租稅制度審議委員會」를 통하여 민간의 意見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後 政府案을 國會에서 審議, 確定하는 절차를 밟았다.

國民의 개발의욕을 집약하여 經濟開發計劃을 적극 추진하였던 60~70년대에 租稅政策은 財政自立과 開發財政需要를 충족하기 위한 財政收入의 확보와 戰略產業의 육성 및 貯蓄增大 등 戰略部門의 집중적 지원을 목표로 삼았다. 그리하여 開發年代에 추진된 稅制改革은 모두 開發支援稅制의 확립과 그 合理化를 도모하기 위한 稅制의 정비와 개선에 주된 목적을 두었다.

* 本研究所 所長, 서울大學校 國際經濟學科 教授.

또한 5개년 단위로 經濟開發計劃을 추진하였던 관계로 稅制는 經濟開發計劃에 步調를 맞추어 대체로 5개년마다 크게 改革되어 왔다고 할 수 있으나 內外 社會經濟情勢의 变化에 대응하기 위해 계획기간중에도 거의 매년 稅制의 미비점이나 불합리한 점이 보완되었다.

60년대에는 제1차 經濟開發 5개年計劃(1962~66年)의 추진에 앞서 1961년 말에 '현행 國稅를 전반적으로 白紙로 환원하고 새로운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國稅 및 地方稅體系의 조정을 포함하는 稅制全般에 걸친 大改革이 있었다.⁽¹⁾ 이改革으로 현행 租稅體系의 기초가 마련되었으나 제1차 5개년計劃기간중 매년 稅制의 보완작업이 계속되었다. 이어 제2차 經濟開發 5개년計劃(1967~71年)의 출범과 함께 1967년 말에는 開發財政需要의 총족과 經濟開發의 지원, 合理的 稅政의 뒷받침을 위한 폭넓고 다양한 내용을 갖는 稅制改革이 실시되었다. 1967년 말 稅制改革은 經濟開發을 지원하는 稅制의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강화하는데 그 기본방향을 두었으며 稅制가 企業의 건전한 육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租稅의 誘因機能이 다양하게 강화되었다. 제2차 5개년計劃기간중에도 매년 주요稅法과 同施行令이 계속 보완되었다.

70년대에는 이미 60년대에 이룩한 經濟成長을 바탕으로 보다 均衡된 成長을 도모하여야 할 政策課題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제3차 經濟開發 5개년 計劃(1972~76년)의 추진에 앞서 (1) 低所得層의 負擔輕減과 公平課稅, (2) 企業의 内部蓄積 및 投資의 촉진, (3) 間接稅와 流通稅負擔의 適正化, (4) 納稅者의 權益保護와 事務緩和, (5) 稅制의 明瞭化와 合理化를 표방하는 稅制의 전면적改革이 실시되었다. 1971년 말에 실시된 稅制改革은 60년대의 稅制改革과 달리 우리나라의 「長期稅制展望」에 기초를 두고 기존 稅制가 지니고 있던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그리고 종합적 몇 차례적으로 시정함으로써 稅制의 합리화를 추구하였던 데 그 특징이 있었다. 당시의 우리나라 長期稅制展望은 1976年경까지에는 所得稅制를 완전한 綜合所得稅制로 전환시키고 間接稅에 있어서는 賣上稅 내지 附加價值稅制의 발전이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보았다.⁽²⁾

그리나 70年代 초반이후 國際通貨秩序의 동요와 제1차 石油波動 및 이에 따른 世界景氣의 침체로 對外 與件이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對內의으로도 인플레이션의 累積과 所得分配의 불평등, 企業財務措置의 취약성 등 지속적인 經濟成長을 저해하는 요인의 불식이 매우 긴박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72년 8월 2일에는 憲法(舊) 제73조에 의한 大統領 緊急命令權을 발동하여 「經濟의 安定과 成長에 관한 緊急

(1) 財務部, 『韓國稅制史』(上), 1979, p. 343.

(2) 稅制審議會, 『稅制改革에 관한 審議報告書』, 1971, pp. 11~12.

命令 제15호」를 공포하고 다음날인 8월 3일부터 시행하였다. 「8.3 緊急經濟措置」로 불리우는 이 非常措置는 60년대 高度成長과정에서 과생된 企業財務構造의 악화(특히 私債의 누증), 物價와 換率의 악순환, 國際競爭力의 약화, 私金融의 평대 등 韓國經濟가 지니고 있었던 구조적 취약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광범한 企業財務構造改善策을 실시함으로써 物價와 換率의 악순환을 단절하고 投資活動을 촉진하여 안정적인 經濟成長基盤을 구축하고자 하였던 획기적인 綜合經濟施策이라고 발표되었다.⁽³⁾ 이 緊急經濟措置로 企業私債의 出資轉換, 產業 또는 企業의 合理化 및 投資 촉진, 國產機資材를 이용하는 投資 확대 그리고 增資를 지원하기 위한 租稅特例가 마련되었다.

이어 1974년 6월 14일에는 憲法(舊) 第53條에 의거하여 「國民生活의 安定을 위한 大統領緊急措置 제 3 호」가 발동되었다. 「1.14 緊急措置」로 불리우는 이 非常措置는 1973년 10월의 1차 石油波動 이후에 야기된 國際的 試練에 직면하여 海外與件의 악화에 따른 외적 衝擊要因을 완화함으로써 國民生活의 安定을 도모하는 동시에 우리經濟의 安定成長基調를 유지한다는 基本目標 아래 취하여졌다.⁽⁴⁾ 이 緊急措置의 주요내용은 (1) 低所得層의 負擔경감과 國民生活의 안정, (2) 高所得層에 대한 重課와 奢侈性消費억제, (3) 勤勞條件의 개선, (4) 關稅減免制度의 개선, (5) 1974년도 豫算의 조정으로 요약된다. 이 緊急措置로 內國稅 및 關稅制度와 地方稅制度에 대폭적인 수정이 가하여졌다.

이에 따라 1974년 말에는 「1.14 緊急措置」를 法制화하는 동시에 전면적인 綜合所得稅制를 도입하여 종래 미흡하였던 稅制의 所得再分配機能을 강화하였다. 또 附加價值稅도입을 위한 전단계措置로서 營業稅體系를 개편하는 한편 國稅基本法을 제정하여 納稅者의 權益을 옹호하는 등 稅制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大改革이 실시되었다. 1974년 말 稅制改革은 國際經濟의 급격한 情勢豫化에 부응하여 새로운 成長發展을 도모하여야 할 轉換期的 課題를 해결하기 위해 國內外 經濟現實의 변화에 대한 稅制의 適應力を 높이는 한편, 기본적으로는 지속적인 經濟의 安定的 成長을 뒷받침하면서 국민총화를 기약할 수 있는 公平한 稅制로서의 體系와 構造를 정비하고자한 데 그 특징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⁵⁾

또한 1975년 上半期에 있었던 越南의 共產化 사태와 가증되는 北偏의 南侵危脅에 처하여 自主國防力의 강화가 시급하게 되자 1975년 7월 16일에는 經濟開發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國防力증강에 소요되는 財源을 조달하기 위해 時限的 目的稅로서 防衛稅가 신설되었다.

(3) 財政金融30年史 編纂委員會, 『財政金融三十年史』, 1978, p. 154.

(4) 財務部, 『韓國稅制史』(上), 1979, pp. 456~463.

(5) 稅制審議會, 『稅制改革에 관한 審議報告書』, 1974, pp. 1~5.

끝으로 제4차 經濟開發 5개년計劃(1977~1981년)의 추진에 앞서 1976년 말에는 다시 稅制의 대폭적인 改革이 이루어졌다. 제4차 計劃은 (1) 自力成長構造의 실현, (2) 社會開發을 통한 衡平의 증진, (3) 技術革新과 能率의 향상을 목표로 삼았으며 投資財源의 自力調達을 주요 政策課題의 하나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1976년 말 稅制改革은 제4차 經濟開發 5개년計劃에서 소요되는 財源調達과 附加價值稅의 도입에 의한 間接稅體系의 전면적 改編, 그리고 綜合所得稅制의 실시과정에서 제기된 問題點의 보완과 그 정착화에 역점을 두었다. 이 改革으로서 1971년 말에 제시된 稅制의 長期發展構想은 일단 그 結實을 보게 되었으며 현행 國稅體系의 骨格이 마련되었다.

1976년 말 稅制改革은 政府樹立後 10여회에 걸친 크고 작은 稅制改革과 달리 그目的이나 改正幅에 있어서 우리나라 稅制史上 歷史的인 課業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제4차 計劃期間중에도 稅制는 계속 정비·보완되었다. 1976년下半期이후 國際經濟環境이 계속 악화되고, 對內적으로는 經濟의 점진적인開放化에 따라 國內企業의 國際競爭力を 강화하기 위한 產業構造의 개편이 불가피하게 된 것과 成長과 安定의 조화가 절실히 요청되었던 內外與件의 변화때문에 지속적인 稅制의 개혁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그밖에 3차에 걸친 經濟開發計劃의 추진으로 經濟規模가 커짐에 따라 開發成果의 均霑에 대한 社會的 關心이 높아 졌던 것도 그原因의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稅制改革의 效果

開發年代인 1960~70년대에는 거의 매년 稅制의 개혁 내지 稅制의 보완·정비가 이루어졌으나 60년대의 稅制改革이 開發財源의 조달과 開發支援稅制의 확립에 중점을 두었다면, 70년대의 稅制改革은 장기적인 稅制改編의 구상을 토대로 하여 稅制의近代化를 도모하면서 稅制의合理化에 의하여 租稅의 經濟的機能을 확대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⁶⁾

經濟開發 5개년計劃을 지원하기 위한 두차례의 전면적인 稅制改革(1961년 말과 1967년 말 稅制改革)을 주축으로 하여 거의 매년 이루어졌던 稅制의 보완과 정비로 60년대에 國家財政의 自立度가 크게 향상되었다. 60년대前半期만 하더라도 一般財政部門歲入에서 점하는 美國援助資金인 對充資金(counterpart fund)의 비중이 30.8% 이상 39.2%(1961년도)를 점하였으나 1966년에는 그 비중이 25%대로 떨어졌다. 그 반면에 1961년 이후 一般財政部門에서 점하는 租稅收入의 비중은 계속 높아져 1962년의 30.3%에서 1966년에는 60.4%로 거

(6) 稅制審議會, 『稅制改革에 관한 審議報告書』, 1971 및 1974, 租稅制度審議委員會, 『租稅改革에 관한 審議報告書』, 1976, 參照.

〈表 1〉 源泉別 部門別 一般財政部門¹⁾歲入(1961~71)

單位 : %

	計	租 稅			專賣益金	稅外收入	對充資金等
		小 計	內國稅	關 稅			
1961 (第1次計劃)	100.0	37.8	29.2	8.6	4.3	18.7	39.2
1962	100.0	30.3	23.1	7.2	4.5	34.3	30.8
1963	100.0	40.9	32.5	8.4	6.4	18.0	34.7
1964	100.0	47.1	36.7	10.4	5.7	11.9	35.3
1965	100.0	51.8	39.9	11.9	3.4	10.6	34.2
1966 (第2次計劃)	100.0	60.4	45.5	11.5	4.9	13.1	25.0
1967	100.0	65.0	52.2	12.3	5.0	10.9	19.1
1968	100.0	70.5	56.7	13.7	5.9	11.5	12.1
1969	100.0	69.9	58.0	11.9	6.4	17.4	6.3
1970	100.0	75.1	63.7	11.4	6.7	12.9	5.3
1971	100.0	73.9	64.5	9.4	8.3	14.0	3.8

資料：經濟企劃院，『主要業務指標』，1978。

註：1) 一般會計임。

의 倍增되었다. 특히 內國稅의 비중은 1962년의 23.1%에서 1966년에는 45.5%로 높아지고, 關稅의 비중은 동 기간중 7.2%에서 11.5%로 높아졌다.

이어 60년대 後半期에는 稅制의 財源調達能力이 더욱 확대되어 70년대 초에는 一般財政部門에 歲入의 75% 정도를 租稅에 의하여 조달하고, 美國援助財源에 대한 依存度는 5%대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같이 國家財政의 自立度가 제고되고 또 1964년부터 健全財政運營을 지향하게 되어 따라 政府貯蓄은 만성적인 負의 貯蓄(經常支出이 經常收入을 초과)에서 벗어나 1964년부터 政府部門은 純貸出者(純貯蓄者)로 변모하게 되었고 稅制를 통한 財源調達能力의 확대와 政府貯蓄率의 상승을 토대로 하여 財政規模가 확실히 늘어 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64~71년 기간중 주요財政指標의 추이를 보면 國家財政의 총 규모는 GNP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여 16.9%에서 21.8%로 높아지고 一般財政部門의 규모는 10.5%에서 16.2%로 확대되었다. 또 政府貯蓄率은 1964년의 0.4%에서 1971년에는 5.2%로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이같이 國家財政規模나 政府貯蓄率이 실질적으로 크게 늘어 났던 것은 동기간中 國稅負擔率이 5.9%로부터 13.4%로 매우 경이적인 상승을 기록하였던 것과 같이 稅制를 통한 財源調達能力이 비약적으로 확대된 데 기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經濟開發을 지원하기 위한 稅制의 誘因機能이 강화됨에 따라 內國稅減免 규모도 확대되었다. 1965년에 內國稅減免 규모는 內國稅徵收實績 대비 8.6%에 지나지 않았으

〈表 2〉 主要財政指標의 推移(1961~71)

單位 : %

	財政規模 (對GNP比率)		租稅負擔 (對GNP比率)		國民貯蓄 (對GNP比率)		內國稅減免 (對徵收實績比率)	
	總規模	一般財政	總租稅	國 稅	合 計	政 府	合 計	外貨獲得 ¹⁾
1961 (第1次計劃)	27.1	19.4	9.7	8.9	2.9	-1.8	-	-
1962	33.7	24.9	10.6	9.2	3.2	-1.6	-	-
1963	22.1	14.5	8.6	7.1	8.7	-0.4	-	-
1964	16.9	10.5	7.1	5.9	8.7	0.4	-	-
1965	19.1	11.6	8.6	7.2	7.4	1.7	8.6	59.3
1966 (第2次計劃)	22.3	13.6	10.7	9.1	11.8	2.7	12.4	65.9
1967	22.7	14.1	12.0	10.9	11.4	4.1	10.6	82.5
1968	24.4	15.9	13.9	12.7	15.1	6.1	8.9	89.1
1969	26.9	16.8	14.6	13.4	18.8	5.9	10.9	86.8
1970	21.9	16.1	14.5	13.3	15.7	6.4	13.5	80.3
1971	21.8	16.2	14.6	13.4	14.6	5.2	15.0	78.6

資料：財務部, 『決算概要』, 各年度, 韓國銀行, 『國民所得計定』, 1984, 財務部, 『稅務統計』, 1971.

註：1) 減免合計에 대한 比率.

나 제 2 차 經濟開發 5個年計劃이 끝난 1971년에는 그 비중이 15%대로 높아졌다. 또 內國稅減免을 類型別로 보면 外貨獲得⁽⁷⁾을 위한 直接稅 및 間接稅減免의 비중이 매우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60년대와 같이 70년대에도 經濟開發計劃을 지원하기 위한 두차례의 稅制改革(1971년 말 및 1976년 말 稅制改革)과 제 3 차 및 제 4 차 計劃기간중에 실시된 緊急措置와 稅制의 보완 및 정비에 따라, 우리나라의 國家財政은 外國援助財源에 대한 의존을 완전 탈피하고 國家財政需要를 주로 租稅收入(國稅 및 專賣益金)에 의하여 충당하는 自立財政과 建全財政을 동시에 달성하게 되었다.

國家財政 一般會計歲入에서 占하는 租稅收入의 비중은 1971년에 73.9% (內國稅 64.5%, 關稅 9.4%)에 달하였으나 70년대에 그 비중은 계속 높아져 1978년에는 83.5% (內國稅 67.5%, 關稅 16%)로 높아졌다. 이에 專賣益金을 합하면 一般會計歲入財源의 90.4%는 광의의 租稅(國稅와 專賣益金)에 의하여 조달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8.3 緊急措置」를 선포하였던 1972년에는 經濟成長의 부진(GNP成長率 5.7%)으로 財政部門의 상대적 규모가 커졌던 반면에 稅收增加率의 둔화(國稅收入 增加率 6.3%, 內國稅

(7) 1970년 外貨獲得減免은 內國稅減免의 80.2%를 占하였으나 直·間接稅의 比重은 20.5:79.5였고 間接稅減免의 比重이 압도적으로 컸다. 直接稅減免중 外國銀行所得의 減免은 5.9%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表 3〉 源泉別 部門別 一般會計(歲入構成)(1972~81)

單位 : %

	計	租 稅			專賣益金	租外收入	預受金等	(對充資金 等)
		小 計	內國稅	關 稅				
(第 3 次計劃)								
1972	100.0	61.2	52.9	8.3	6.1	3.8	28.9	(1.7)
1973	100.0	74.8	62.9	11.8	8.2	8.0	9.0	(0.4)
1974	100.0	80.7	68.6	12.1	6.6	5.0	7.7	(—)
1975	100.0	77.0	65.9	11.1	8.3	5.7	9.0	(—)
1976	100.0	80.5	68.9	11.6	7.5	6.4	5.6	(—)
(第 4 次計劃)								
1977	100.0	80.3	67.4	12.9	7.4	9.0	3.3	(—)
1978	100.0	83.5	67.5	16.0	6.9	7.4	2.2	(—)
1979	100.0	79.9	66.6	13.3	6.5	11.7	1.8	(—)
1980	100.0	79.8	68.3	11.5	7.7	9.6	2.9	(—)
1981	100.0	80.5	69.6	10.9	8.3	5.2	6.0	(—)

資料：經濟企劃院『主要經濟指標』，1985。經濟企劃院，『主要業務指標』，1978。

〈表 4〉 主要財政指標의 推移(1972~81)

單位 : %

	財政規模 (對 GNP 比率)		租稅負擔 (對 GNP 比率)		國民貯蓄 (對 GNP 比率)		內國稅減免 (對徵收實績比率)	
	總規模	一般會計	總租稅	國 稅	合 計	政 府	合 計	外貨獲得 ¹⁾
(第 3 次計劃)								
1972	23.3	16.9	12.6	11.5	16.5	3.5	17.1	73.9
1973	17.9	12.2	12.1	10.8	22.8	4.0	22.6	73.7
1974	19.0	13.5	13.6	12.2	19.9	2.6	23.6	60.0
1975	21.0	15.2	15.4	13.8	19.1	3.7	23.8	70.2
1976	20.9	15.4	16.7	15.1	23.9	5.8	28.7	66.0
(第 4 次計劃)								
1977	20.5	15.1	16.3	14.5	27.5	5.2	26.2	68.2
1978	19.6	14.6	16.9	15.1	28.5	6.3	14.8	30.1
1979	20.7	16.2	17.2	15.2	28.1	6.9	12.3	33.9
1980	23.2	17.4	17.7	15.6	21.9	5.8	15.8	42.1
1981	23.3	17.3	17.9	15.9	21.7	6.2	14.8	44.3

資料：財務部，『決算概要』各年度。韓國銀行，『國民所得計定』，1984。財務部，『主要稅務統計』1981。

註：1) 減免合計에 대한 比率。(1977年부터 附加價值稅 零稅率適用分除外)

收入增加率 5.3%)로 租稅負擔率이나 政府貯蓄率은 모두 전년대비 감소되었으나 內國稅減免比率은 1971년의 15% 수준에서 17.0%로 높아졌다. 그러나 1973년의 1차 石油波動을 거쳐 1974년에 「1.14 緊急措置」가 취하여지고, 동년말에 稅制改革을 통하여 緊急措置의法制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租稅負擔率은 계속 높아져 제 3 차 計劃의 최종년도인 1976년에는 總租稅負擔率이 16.7%，國稅負擔率이 15.1%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財政規

模나 政府貯蓄도 실질적으로 증가하였으나 開發支援稅制의 심화로 內國稅減免比率은 1976년에 28.7%를 기록하게 되었다.

70년에 이르러 1973년 3월부터 종래 輸出, 軍納用役, 觀光, 기타事業등 外貨獲得事業에서 생기는 外貨獲得所得에 대하여 직접 所得稅나 法人稅를 감면하여 주던 것을 間接支援制度인 輸出損失準備金制度와 海外投資損失準備金制度로 전환시킴에 따라 유형별로 보면 外貨獲得事業에 대한 租稅減免의 비중은 크게 떨어졌으나 1976년도에 그 비중은 66%를 점하였다.

60년대와 달리 70년대의 稅制改革은 稅收增大와 開發支援을 위한 租稅誘因의 강화에만 목적을 두었던 것은 아니다.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경제구조가 복잡하게 됨에 따라 稅制의所得再分配機能을 강화하고 公平課稅의 실현과 함께 開發支援稅制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課題가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1971년 말 稅制改革이 우리나라 稅制의長期發展展望(構想)을 제시하였던 것이나, 1974년 말 稅制改革이 所得稅制를 綜合所得稅制로一元化한 것, 1976년 말 稅制改革이 附加價值稅의 도입으로 間接稅體系를 간소화하고 課稅의 中立性을 높인 것 등 稅制의 개편은 단지 開發所要財源의 추가적 調達에만 그目的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를 稅制改革은 稅制의近代化에 의하여 課稅의 公平을 실현하고, 課稅의中立性을 제고시킴으로써 稅制의 經濟的機能을 강화하자는 데도 그目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1974年末 稅制改革으로 所得稅制를 綜合所得稅制로一元化함에 따라 內國稅에서 점하는 所得稅收入의 비중은 1973년 28.2%, 1974년 22.9%에서 1975년에는 19.6%로 떨어졌다. 그 후 人的控除水準의 上向調整 등에 따라 1980년에는 그 비중이 18%로 떨어졌다. 이같이 綜合所得稅制로의 一元化로 所得稅의 稅收效果가 약화된 것은 課稅公平을 추구하는稅制改革의 당연한 產物이라고 할 수 있다.⁽⁸⁾

한편 1976년 稅制改革으로 실시된 附加價值稅의 도입은 종래 11개 稅目에 이르고 있던 間接稅中 8개 稅目을 附加價值稅로 흡수통합하여 복잡, 다기화된 稅率 및 課稅節次를 간소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종래의 間接稅制下에서 일어났던 累積課稅를 배제함으로써 課稅의中立性을 확보하는 동시에 資源의 效率的配分을 촉진하자는 데 그導入目的이 있었다.⁽⁹⁾ 附加價值稅의 도입에 따라 附加價值稅의 單一稅率適用에서 생겨 나는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8) 綜合所得稅制의 一元化로 모든 所得者에게 基礎控除나 配偶者控除, 扶養家族控除 등 人的控除가 적용되게 되었다.

(9) 租稅制度審議委員會, 『稅制比率에 관한 審議報告書』, 1976, p. 17.

여제하고 稅負擔의 逆進性을 해소할 목적으로 特別消費稅가 신설되었다. 代替된 8개 内國消費稅의 内國稅 稅收上의 비중은 1976년에 50.2%를 점하였으나 1978년에는 内國稅收入에서 附加價值稅가 37.1%, 特別消費稅는 14.5%를 점하였으므로 附加價值稅의 도입은 稅收 증대에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81년 현재 附加價值稅와 特別消費稅의 内國稅收入上의 비중은 각각 39.3%, 14.5%, 도합 53.8%가 된다.

III. 附加價值稅의 導入經緯

1. 최초의 提案

우리나라의 稅制에 附加價值稅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최초의 提案은 1971년 말 稅制改革을 위하여 1971년 1월 18일에 財務部에 설치된 稅制審議會(Tax Deliberation Committee)에 의하여 이루어졌다.⁽¹⁰⁾ 동 審議會는 民間人 委員 30名으로 구성되었다. 委員의 職業別構成은 大學教授가 10名, 經濟團體代表 7名, 言論機關代表 5名, 辯護士 및 稅務士 3名, 學術研究機關代表 2名, 勤勞者代表(勞總委員長) 1名, 政黨代表 1名, 前職 高位公務員(稅政次官補) 1名이었다.

稅制審議會는 稅制改革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稅制改革에 반영시키는 審議機構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고, 우리나라 政府 수립직후부터 설치·운영되어 왔던 오랜 歷史⁽¹¹⁾를 갖고 있었으나 특히 70년대에는 內外經濟情勢의 급변으로 그 活動이 활성화되었다.

1971년초에 설치된 稅制審議會는 社會 各界各層의 의견을 폭넓게 받아들여 이를 稅法改正에 반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審議節次를 거쳤다. (1) 각종 經濟團體와 社會團體 그리고 租稅專門家 및 稅制審議會 委員들로부터 현행稅制가 지니고 있는 問題點에 대한 意見를 광범위하게 청취하였다. (2)各界各層의 意見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全體會議의 결정에 따라 별도 구성된 稅制審議小委員會(1971년에는 9名의 委員으로 구성)에 부의하여 이를 심의케 하였다. (3) 同 小委員會의 결론을 다시 全體會議에서 심의한 끝에 제기된 문제에 대한 審議會의 결론을 확정시켰다. (4) 끝으로 1971년 8월에 稅制審議會의 意見을 종합하여 「稅制改革에 관한 審議報告書」를 政府에 제출하였다.

동 審議會는 稅制改革案의 심의에 앞서 「현행 稅制를 전면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그리고

(10) 稅制審議會, 『稅制改革에 관한 審議報告書』, 1971, p. 65.

(11) 1948年 政府수립직후 '新生民國의 財政確立과 國民負擔의 調整'을 위하여 稅制改革委員會를 설치하여 稅制比率을 推定하였다. 財務部, 『財政金融의 回顧』, 1958, p. 58.

長期稅制의 展望과 관련시켜 기본적으로 검토한다는 審議方針」을 설정한 바 있으나 長期稅制의 展望으로서는 늦어도 1976년경까지에는 所得稅를 완전한 綜合所得稅로 전환하고, 間接稅에 있어서는 賣上稅 내지 附加價值稅制로의 발전이 필요 불가결하다는 구상이 제시되었다. ⁽¹²⁾

長期稅制發展方向으로서 所得稅를 완전한 綜合所得稅로 전환시킨다는 데에 대하여는 이미 1967년 말 稅制改革에서 分類所得課稅와 綜合所得課稅를 병행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綜合所得稅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方針이 채택되었던 관계로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¹³⁾ 그러나 間接稅體系를 賣上稅 내지 附加價值稅로 발전시킨다는 長期稅制發展의 展望에 대하여는 長期稅制展望이나 稅制改革案에 대한 심의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던 稅制審議小委員會에서 적지 않는 論難이 거듭되었다.

당초 稅制當局은 間接稅發展의 長期展望으로서 EC型 附加價值稅의 導入案을 제시하였으나 稅制審議小委員會에서는 間接稅體系의 개편 必要性은 인정하되 流通秩序의 확립과 納稅者의 성실하고 정확한 記帳 및 去來의 記錄이 전제되어야 하는 附加價值稅의 도입에 앞서 먼저 賣上稅의 실시로 附加價值稅導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경험을 축적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강력한 의견이 제시되었다.⁽¹⁴⁾

당시 우리나라의 國稅에는 다단계 賣上稅(multiple stage sales taxes)의 일종인 營業稅(business tax)가 있었으나 이 租稅는 1971년 현재(동년 말 稅制改革전) 20개로 분류된 業種별로 收入金額, 販賣金額, 都給金額에 따라 최저 0.3% 최고 2.0%에 이르는 6단계 차등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그밖에 75개 物品에 대하여 최저 5%에서 최고 100%에 이르는 10단계 차등세율로 과세되는 個別消費稅인 物品稅가 있었다. 이 두가지 稅目은 다 같이 차등과 세효과가 크기 때문에 租稅의 資源配分歪曲效果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일단계 賣上稅(single stage sales taxes)나 附加價值稅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하지만 記帳能力이나 納稅意識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또 유통구조나 유통단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못하고 있는 여건을 감안하여 일단 賣上稅制度를 도입한 후 附加價值稅制로의 이행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稅制審議小委員會에서는 間接稅體系의 長期發展方向으로서 附加價值稅의 도입만이 아니라 賣上稅의 도입可能性도 고려한다는 점을 청중안을 채택하였으며, 이 小委員會의 결

(12) 財務部, 『稅制改革의 大綱』, 1971, pp. 7~11.

(13) 財務部, 『稅制改革白書』, 1967, p. 45.

(14) 당시 稅制審議委員會 委員의 回顧와 '배고'에 의거함.

론은 稅制審議委員會 全體會議에서 확정되었다.⁽¹⁵⁾

2. 附加價值稅의 도입을 위한 稅制의 정비

1971년초에 구성된 稅制審議會은 1971년 말 稅制改革을 위하여 ‘점차 현행 物品稅를 정리하고 營業稅는 賣上稅 내지 附加價值稅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長期 稅制發展의 전망에 따라 그 단계적인 조치로서 ‘營業稅의 유사업종 및 稅率을 통합조정하는 한편 業種의 類別도 단순화하고 稅率도 外國의 賣上稅와 같이 現實에 맞도록 조정할 것’을 건의하였다.⁽¹⁶⁾

이에 따라 1971년 말 稅制改革에서는 營業稅의 業種을 종전의 20개 業種에서 11개 業種으로 축소하고 稅率도 23개에서 16개로 간소화하였다.

이어 1974년 말 稅制改革에서는 전면적인 綜合所得稅制의 실시와 함께 營業稅制度를 賣上稅 내지 附加價值稅에 접근시키기 위한 制度개편이 이루어졌다.⁽¹⁷⁾

첫째로 指定源泉徵收制度를 확대하였다. 政府의 지정에 의해 源泉徵收義務가 발생하는指定源泉徵收制度는 종래 鑛產·製造 및 一次都賣業者에 대하여 40개 品目에 한하여 지정되었으나 이를 개정하여 모든 製造·都賣·鑛產業에 대하여 品目에 관계없이 源泉徵收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이 같이 去來金額에 대한 營業稅의 源泉徵收 확대로 企業이 거래할 때마다 그 去來相對者로부터 稅金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賣上稅 내지 附加價值稅의 課稅方法을 사전에 예행 실시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 送狀(invoice) 또는 領收證의 기능을 갖는 標準計算書制度를 신설하여 物品을 판매, 인도할 때 또는 用役의 제공을 완료할 때 標準計算書를 작성, 교부하도록 義務化함으로써 根據課稅의 기본이 되는 領收證授受의 生活化를 도모하였다.

셋째로 營業者納稅番號制度를 도입하여 營業者로 하여금 매년 營業稅 納稅者登錄을 시키고 이를 등록자에게는 營業者納稅番號證을 교부함으로써 과세자료의 電算處理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넷째로 營業者로 하여금 성실하게 帳簿를 비치·기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記帳稅額控除(10%)를 簡易帳簿義務者에게까지 확대하고, 개인의 帳簿備置·記帳義務의 한도액을 대폭 인상하여 그 義務를 완화하였다.

한편 1974년 3월 12일에 구성·설치된 稅制審議會는 長期稅制의 方向과 課題의 하나가 ‘賣上稅 또는 附加價值稅 등 一般消費稅制度의 확충 내지 도입에 의한 間接稅體系의 정비’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長期稅制發展의 일환으로 營業稅制를 賣上稅制 내지 附加價值

(15) 稅制審議會, 『稅制改革에 관한 審議報告書』, 1971, p. 65.

(16) 稅制審議會, 『稅制改革에 관한 審議報告書』, 1971, pp. 65~68.

(17) 財務部, 『간추린 改正稅法』, 1975, pp. 91~115.

稅로 전환시키기 위한 단계적 조치로서 營業稅의 業種과 稅率을 계속 통합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하였다.⁽¹⁸⁾ 다만 業種 및 稅率의 단순화를 위한 통합·조정에 있어서는 營業稅의 收益稅的인 성격과 去來稅的인 稅負擔의 累積效果를 고려하여 業種別 附加價值率, 去來段階 및 產業政策의 고려가 신중히 감안되어야 한다고 전의하였다.

1974년 말 稅制改革은 營業稅의 業種分類나 稅率構造를 통합·조정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稅制審議會의 建議에 따라 營業稅의 稅率을 조정하였다.

3. 外國租稅專門家에 대한 諮問

韓國動亂 직후 戰時稅制를 平時稅制로 전환하기 위한 稅制改革이 당시 UN租稅專門家였던 월드(H.P. Wald)가 제출한 『韓國稅制에 관한 報告와 建議』(1953년 8월 25일)를 크게 참작하였던 것이나⁽¹⁹⁾, 開發支援稅制를 확립하기 위한 1967년 말 稅制改革이 이른바 「머스 그레이브 報告書」⁽²⁰⁾에 크게 의존하였던 것과 같이, 附加價值稅의 도입도 外國租稅專門家에 의한 研究와 諮問에 큰 도움을 받았다.

아일랜드의 歲入委員會 委員長을 역임하고 당시 IMF 財政專門家였던 뒤그낸(James C. Duignan)은 政府의 요청에 의하여 1972년과 1976년 두차례에 걸쳐 來韓, 우리나라의 附加價值稅 導入可能性에 관하여 研究報告書를 제출하고 附加價值稅行政 및 經過措置, 附加價值稅法案準備에 관한 실무적인 諮問에 응하였다.

뒤그낸의 報告書⁽²¹⁾는 附加價值稅의 導入可能性을 검토한 것으로서 그 요지는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첫째로, 經濟開發計劃을 추진하기 위한 所要財源은 주로 消費支出에 대한 租稅로부터 조달되어야 하지만 多段階 累積賣上稅인 營業稅나 課稅目的上 선택된 단계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單段階稅인 物品稅는 적합한 租稅는 아니다. 현행 營業稅를 개선하고 광범위한 課稅品目에 과세할 수 있는 賣上稅는 바로 附加價值稅이다.

둘째로, 韓國은 이미 포괄적인 納稅者登錄制를 실시하고 있고, 小賣段階에 이르기까지 모든 商品과 서비스의 生產 및 分配에 營業稅가 부과되어 分期別로 납세하는 것이 慣例가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去來源泉徵收制度나 支給 및 販賣報告書를 제출하는 制度도 장기간 실시되어 왔다. 그밖에 稅政의 電算化 가능성도 附加價值稅와 관련하여 韓國이 갖고 있는

(18) 稅制審議會, 『稅制改革에 관한 審議報告白書』, 1974, p. 24, pp. 58~61.

(19) 財務部, 『韓國稅制史』(上), 1979, p. 283.

(20) R.A. Musgrave, *Revenue Policy for Korea's Economic Development*, Sept. 27, 1965.

(21) "Report on the Feasibility of Introduction of Unified Income Tax and Value Added Tax in Korea," Sep., 1972. 財務部稅制局, 『附加價值稅의 理論과 實際』, 1975. 3, pp. 277~368.

利點이다.

셋째로, 韓國이 附加價值稅의 도입에 따라 직면하게 될 불리한 면은 附加價值稅를 도입하였던 많은 나라가 경험하였던 것과 같이 실무경험이 있는 公認會計士의 부족과 모든 營業者가 法이 규정한 최소한의 記帳義務를 이행하도록 稅務行政을 강화할 수 없기 때문에 租稅逋脫이 많아 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附加價值稅의 導入時期는 (1) 앞으로 수년간에 걸친 帳簿備置 수준과 記帳能力의 개선정도 (2) 附加價值稅의 導入計劃과 法律案준비의 진출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지만 附加價值稅制는 도입준비와 소요稅收額에 따라 1975년이나 1976년 1월에 도입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뒤그낸의 公正적인 報告書는 政府로 하여금 附加價值稅의 도입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하였으며 1973년 7월에는 쇼우프(Carl S. Shoup)를 초청하여 附加價值稅의 도입 가능성과 物價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²²⁾ 그 요지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로, 營業稅의 稅率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면 營業稅가 單段階稅(製造段階·都賣段階·小賣段階賣上稅)나 附加價值稅로 대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러 형태의 賣上稅중 어느 것 이 韓國에 상대적으로 바람직한가를 비교하기 위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둘째로, 10%의 附加價值稅는 현행 營業稅보다 훨씬 더 과중한 賣上稅가 될 것이며 현행 營業稅에 대한 附加價值稅의 초과분만큼 消費財價格을 상승시킬 것이다. 또한 현행 營業稅下에서는 課稅對象인 生產財가 附加價值稅下에서는 실질적으로 면세되는 이상 價格上昇의 정도는 더욱 클 것이다. 그러나 附加價值稅는 일회에 한한 價格上昇을 유발한다.

셋째로,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附加價值稅의 稅率은 단일稅率과 零稅率를 갖는 단순한 租稅가 되어야 하고 가능한 한 課稅對象은 넓어야 한다.

끝으로, 쇼우프博士는 納稅者에 대한 광범위한 教育캠페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1975년과 1976년에는 IMF의 租稅顧問인 테이트(Alan A. Tait)를 초청하여 附加價值稅가 價格과 所得稅分配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검토케 하였다. 테이트도 두차례의 報告書를 제출하였는데 제 1 차 報告書⁽²³⁾는 (1) 附加價值稅의 稅率을 10%로 하면 營業稅와 物品稅를 모두 대체할 수 있고 (2) 營業稅와 物品稅의 稅率이 2%에서 300%에 이르고 있는 상황하에서 10%의 附加價值稅로 전환한다면 高率로 과세되고 있던 奢侈性物品이나 耐

(22) 財務部稅制局, 『韓國의 租稅制度에 대한 建議』, 1973. C.S. Shoup, *Response to Questions Posed by Ministry of Finance, Republic of Korea*, Seoul, Korea, July 18, 1973.

(23) IMF, Fiscal Affairs Department, *A Report on the Possible Korean Value-Added Tax(VAT)*, prepared by Alan A. Tait, Dec. 18, 1975.

久消費財에 대한 中產層에 消費에 있어서 逆進性이 두드러질 것이므로 이들 物品에 대하여는 特別消費稅를 부과하는 것이 소망스럽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또 테이트의 제 2 차 報告書⁽²⁴⁾는 稅率과 附加價值稅가 物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

(1) 附加價值稅의 稅率은 新稅와 대체될 舊稅의 稅收로 보아 新稅로 인한 稅收增加分을 고려할 때 역시 10%정도면 충분하다.

(2) 附加價值稅의 도입이 物價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經濟成長을 동시에 경험하여 온 韓國에 있어서는 企業가 附加價值稅때문에 價格引上要因이 있을 때는 그것을 구실로 삼아 價格을 더 인상하고, 價格引下要因이 있을 때에는 덜 인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附加價值稅의 도입으로 價格變動要因이 발생하는 物品에 대한 강력한 價格規制와 監視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物價變動은 上下 1% 정도에 그칠 것이다.

끝으로, 1976년 6월에 뉴그랜을 다시 초청하여 附加價值稅行政과 教育 그리고 경과조치와 附加價值稅法 작성에 대한 實務的인 諮問을 구하였다.

그밖에 1974년 7월에는 財務部 稅制局 公務員과 學界人士로 구성된 附加價值稅 視察團을 英國, 西獨, 벨기에 등에 파견하여 각국의 附加價值稅 도입과정, 制度, 成果, 導入準備狀況 등을 시찰하게 하였다. 이 視察團이 제출한 調查報告書의 建議事項중 많은 부분이 附加價值稅法 입안의 기초가 되었다. ⁽²⁵⁾

4. 租稅制度審議委員會의 諮問

附加價值稅의 도입을 위한 政府의 공식적이고 본격적인 활동은 1976년 1월 19일에 大統領에 대한 財務部長官의 1976년도 業務計劃의 報告에서 1977년 7월 施行을 目標로 하는 附加價值稅 및 特別消費稅 도입에 의한 消費稅體系의 改編計劃이 밝혀짐으로써 시작되었다. ⁽²⁶⁾ 財務部長官은 國民生活의 안정과 제 4 차 經濟開發 5개년計劃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稅制의 全面改革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서의 附加價值稅 및 特別消費稅의 도입에 의한 消費稅體系의 개편은 ① 稅制의 단순화 ② 輸出과 投資의 우대 ③ 脱稅의 제도적 봉쇄 효과에 있다고 밝혔다.

(24) IMF, Fiscal Affairs Department, *A Report on the Proposed Korean Value-Added Tax,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Effects on the Retail Price Index and on Household Expenditures*, Prepared by Alan A. Tait, June 21, 1976.

(25) 崔震培, 『韓國의 附加價值稅』, 1984, p.53.

(26) 財務部, 大統領에 대한 1976년도 業務計劃報告, 『1976年度 業務計劃』, pp. 161-162.

이어 財務部長官은 1976년 1월 28일에 22名의 民間人을 租稅制度審議委員으로 위촉하였다. (27) 1976년도 稅制改革을 위하여 財務部內에 설치된 租稅制度審議委員會는 大學教授 7名, 學術研究機關代表 3名, 言論機關(日刊紙) 論說委員 4名, 金融機關代表 4名, 辯護士 1名, 經濟科學審議會議(政府機關) 常任委員 1人, 政黨의 政策研究室 專門委員 2名으로 구성되었다.

租稅制度審議委員會는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全體會議의 결정에 따라 2개 分科委員會를 구성하였다. 第1分科委員會는 所得稅法 등 一般稅法 分野를 다루고 第2分科委員會는 附加價值稅法을 다루도록 하였다. 第1分科委員會는 租稅制度審議委員會 委員長을 포함하는 15名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分科委員長은 大學教授인 委員으로 위촉하였다. 第2分科委員會는 역시 租稅制度審議委員會 委員長을 포함하는 8名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分科委員長은 經濟科學審議會議 常任委員인 租稅制度審議委員으로 위촉하였다.

한편 附加價值稅制의 도입문제를 심의하였던 第2分科委員會의 構成委員을 職業別로 보면 分科委員長은 政府의 政策審議機構였던 經濟科學審議會議(大統領 직속기관)의 常任委員이었고, 그밖에 委員 7名은 財政學전공 大學教授 2名, 財政學전공 研究기관 研究委員 1名, 經濟學전공 研究기관 所長 1名, 政府投資機關(금융관계) 임원 1名, 政黨 政策研究室 專門委員 2名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租稅制度審議委員會은 1970년 1월 28일에 제 1 차 會議를 개최한 이래 1976년 6월 11일에 이르기까지 각 分科委員會는 20回에 걸쳐 稅法改正案을 事項別로 신중히 심의하는 동시에各界에서 제안된 建議事項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같은 심의과정을 거쳐 얻어진 分科委員會의 審議結果를 토대로 租稅制度審議委員會는 全體會議를 연 11회에 걸쳐 개최하여 分科委員會의 심의결과를 보완·조정하여 租稅制度審議委員會로서의 意見을 종합· 확정하였다. 租稅制度審議委員會는 附加價值稅의 도입을 포함하는 1976년도 「稅制改革에 관한 審議報告書」를 1976년 6월 16일에 財務部長官에게 제출하였다. (28)

附加價值稅의 도입문제를 전적으로 심의하였던 제 2 분과委員會와 租稅制度審議委員會 全體會議에서 부각된 주요한 爭點과 그 賛反의 意見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가. 專門分科委員會의 審議⁽²⁹⁾

먼저 附加價值稅의 도입문제를 전문적으로 검토한 第2分科委員會에 있어서의 爭點은 ①

(27) 租稅制度審議委員會, 『稅制改革에 관한 審議報告書』, 1976, pp. 1-4.

(28) 租稅制度審議委員會, 『稅制改革에 관한 審議報告書』, 1976, pp. 1-2.

(29) 당시의 租稅制度審議委員會委員들의 回顧와 陳述, 배포, 『稅制改革에 관한 審議報告書』에 의거하고 있다.

先進稅制라고 할 수 있는 附加價值稅를 도입할 수 있는 納稅環境이 마련되어 있는가의 여부 ② 附加價值稅의 도입에 따른 物價上승문제 ③ 租稅負擔의 증가 여부 ④ 附加價值稅負擔의 逆進性 문제 등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를 위시하여 ⑤ 免稅의 범위 ⑥ 納稅義務者의 범위 ⑦ 稅率構造 ⑧ 小規模事業者の 처리 등 消費型 附加價值稅의 도입에 따른 課稅技術上の 문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대상에 이르고 있었다. 이들 爭點에 대한 주요한 贊反의 論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納稅環境問題

E C型 附加價值稅는 前段階稅額控除方法에 의하여 賣出稅額에서 前段階로부터 매입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買入稅額을 공제하여 納付稅額을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附加價值稅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事業者가 稅金計算書(tax invoice)를 작성하여 거래할 때마다 이를 수수하고, 帳簿를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또 流通經濟秩序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① 우리나라의 中小企業의 경우 정확한 記帳과 送狀(invoice)을 수수하는 慣行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현행 營業稅의 과세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納稅者가 認定課稅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1976년도 個人營業稅 1,2기분 합계 納稅人員의 2.7%만이 記帳實查에 의한 과세). ② 流通構造도 流通段階가 다단계이고 流通機能이 미분화되고 혼합되어 있는 복잡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附加價值稅의 도입이 納稅者的 적응만이 아니라 稅務行政의 집행면에서 무리 내지 시기상조⁽³⁰⁾라는 附加價值稅 도입에 대한 反對論이 주장되었다.

이에 대하여 附加價值稅의 도입을 찬성하였던 委員이나 政府側의 견해는 대략 다음과 같았다.

① 우리나라에는 이미 附加價值稅와 내용이 비슷한 營業稅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營業稅는 多段階稅이며 小賣와 서비스段階까지 망라하여 去來段階마다 과세되고, 鑛產業者·製造業者·都賣業者·輸入業者は 자기의 商品을 매출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營業稅를 源泉徵收하여 납부하는 去來源泉徵收制度를 활용하고 있다. 이 去來源泉徵收制度는 바로 附加價值稅의 賣出稅額의 징수와 賣出稅金計算書의 발행과 같다. 따라서 현행 營業稅는 그 内容에 있어서 附加價值稅와 별로 차이가 없다. 또 稅金計算書를 미치하면 별도의 記帳이 필요없도록 제도화할 수 있고, 記帳이 어려운 업종에 대하여는 金錢登錄機의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記帳에 갈음할 수도 있다. 또한 附加價值稅의 정상적인 課稅方法이라 할 수 있는 稅金計算書에 의한 買入稅額 控除方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小規模事業者에 대하여는 外國의

(30) 이 같은 主張은 당시의 經濟界的 공통적인 主張이기도 하였다.

사례와 같이 課稅特例者制度에 의하여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과세할 수 있다. 끝으로 推計課稅의 비중이 높은 문제 즉 自進申告納付制度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적극적인 지도와 租稅誘因의 공여로 自進申告納付制度의 정착에 노력할 수 밖에 없다.

② 流通構造문제는 우리나라의 流通構造에 전근대적인 부문이 없지 않으나 附加價值稅를 시행할 수 없을 정도로 流通構造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流通秩序나 商道義面에 다소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2) 附加價值稅 導入에 따른 物價上昇 문제

附加價值稅의 稅收가 대체되는 稅目의 稅收와 같아지도록 附加價值稅의 稅率이 책정되면 理論上 物價水準의 변동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EEC諸國의 선례가 보여 주고 있는 것과 같이 附加價值稅의 도입으로 課稅對象간 相對價格의 변화와 높은 租稅轉嫁度, 納稅者の 心理的인 영향 등으로 物價를 자극하기 때문에 附加價值稅의 도입은 再考되거나 景氣下降期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³¹⁾

이에 대하여 政府側은 다음과 같은 見解를 밝혔다. 附加價值稅의 導入 自體가 증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間接稅制度를 근대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稅率도 舊稅(營業稅, 物品稅, 織物類稅, 石油類稅, 電氣gas稅, 通行稅, 入場稅, 遊興飲食稅)에 의한 稅收水準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13%로 책정하고 있어 理論上 物價上昇要因은 없다. 또 物價體系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는 주장⁽³²⁾도 있으나 食料品 등 生活必需品에는 免稅하도록 하고 相對價格변화 등에 의한 편승적인 價格引上을 최대로 억제하기 위해 주요品目的 價格變動의 크기를 사전에 고시하여 부당한 價格引上을 규제하도록 하면 附加價值稅의 도입이 物價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극소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营業稅는 多段階累積稅였기 때문에 稅金의 累積으로 物價에도 악영향을 미치지만 附加價值稅는 累積效果가 없어 物價에 대한 영향은 累積效果가 제거되는 것 만큼 줄어들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景氣下降期에 새로운 稅制를 도입하게 되면 租稅摩擦이 더 커질 우려도 있다.

(3) 租稅負擔의 증가

政府가 밝혔던 것과 같이 1976년 말 稅制의 전면改革은 國民生活의 安定을 도모하고 제4차 5개년計劃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稅制에 질적發展을 기하는 데 있었다. 제4차 計劃은 計劃期間中 總財政負擔率을 1976년의 27.1%에서 1981년에 27.9%로 높이

(31) 1974년 10월 17~18일 아르헨티나의 부에이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최되었던 「附加價值稅行政에 관한 심포지움」에서 논의된 내용이 稅友會刊 月刊『國稅』誌 1975.9월호에 소개되었으며 이에 따라 物價에 대한 영향이 우려되었다.

(32) 당시의 審議委員 중 한 사람은 이 問題를 重點的으로 지적하였다.

고, 租稅負擔率도 18.3%에서 21.0%로 높일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³³⁾ 그러나 세차례의 5個年計劃을 추진하는 가운데 國民租稅負擔率이 1965년에 8.6%에서 1976년에는 16.7%(1980年基準改編 國民所得系列에 의한 負擔率이며 1970年 基準改編 國民所得系列에 의하면 1965년은 8.6%, 1976년은 19.1%가 된다)로 國民負擔水準이 근 倍가 되었기 때문에 增稅를 위한 稅制改革에 대하여는 많은 論難이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대하여 政府側은 附加價值稅의 稅率을 13%로 책정한 것⁽³⁴⁾은 단지 舊稅에 의한 稅收水準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稅率의 높이에 불과하고 附加價值稅의 도입은 間接稅制度를近代化하기 위한 것이지 租稅收入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4) 附加價值稅負擔의 逆進性

附加價值稅의 가장 큰 短點은 그 負擔의 逆進性에 있다. 附加價值稅는 원칙적으로 모든 財貨의 공급과 用役의 제공 및 輸入하는 財貨를 課稅對象으로 하여 單一 또는 複數稅率로 과세되기 때문에 低所得層의 負擔이 高所得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租稅制度審議委員會 제 2分科委員會의 심의에 있어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고 附加價值稅 도입에 따른 稅負擔의 逆進性을 상계하는 조치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대한 政府側의 견해는 ① 附加價值稅는 營業稅에 대체되는 것으로 稅負擔의 逆進性을 심화시키지 않으며 ② 逆進性을 줄이기 위해 食料品, 燃料, 大衆交通, 醫療 등에 대하여는 附加價值稅를 면세하고 ③ 特別消費稅를 신설하여 寶石, 貴金屬 등 29개 品目에 대하여는 高率의 特別消費稅를 부과하며 ④ 附加價值稅의 逆進性을補完하기 위해 특히 低所得層과 中產層의 所得稅負擔을 경감시킨다는 것이다.

(5) 免稅의 範圍

所得稅가 基礎生計費에 대한 課稅를 면제하는 것과 같이 一般消費稅도 食料品이나 水道물, 煤炭과 無煙炭, 大衆交通用役과 教育用役에 대하여 면세⁽³⁵⁾하는데 異論이 있을 수 없으나, 1976年 時點에서는 加工食品에 대한 免稅與否를 위시하여 醫療서비스나 醫療品, 圖書·新聞·雜誌, 農護士·公認會計士 등 自由職業에 대한 免稅여부에 대하여는 많은 논난이 있었다.

加工食品에 대하여는 外國의 예와 같이 免稅하거나 低率課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

(33) 經濟企劃院, 『第4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 1976.

(34) 당초 政府는 附加價值稅率을 10%로 豐定하고 있었으나 附加價值稅의 代替로 稅收不足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13%로 변경하였다고 볼 수 있다.

(35) 당시 零稅率適用에 의하여 附加價值稅를 완전 면제하는 문제가 많이 論議되지 못하였으나 이는 未加工食品에 대한 零稅率適用이 行政上 어렵기 때문에 그밖의 財貨나 用役의 供給에는 零稅率을 적용하는 것이 不公平하다고 생각되었던 데 그 원인이 있었다.

으나 政府側은 加工食品이 副食보다 嗜好品에 가까운 것이 많고 消費層도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加工食品(菓子類포함)이 차지하는 稅收도 커기 때문에 免稅對象에 포함시키는 데에 난색을 표명하였다.

醫師·辯護士 등 自由職業用役에 대한 消費稅의 과세는 醫療費 등을 높이기 때문에 免稅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納稅(稅負擔의 配分)라는 측면에서는 高額所得者의 自由職業用役을 면세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대하여 免稅對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는 ① 營業稅下에서도 自由職業用役은 면세되었고 ② 醫療用役에 대한 과세는 醫療費를 높여 社會의으로 소망스럽지 않으며 ③勤勞用役이 附加價值稅課稅對象에서 제외되는 것과 같이 自由職業用役도 免稅對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圖書·新聞·雜誌·放送 등에 대하여는 外國의 예에 따라 免稅對象을 新聞과 放送에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國民文化의 창달을 위해 圖書·雜誌出版도 장려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醫療서비스와 같이 醫藥品도 附加價值稅의 免稅對象으로 삼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는 醫療서비스와 治療用醫藥品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醫師 등의 處方箋에 따라 醫藥品을 배합하여 疾病治療에 적합하도록 투여하는 藥師가 제공하는 醫藥品의 調劑用役은 면세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藥局에서 판매하는 醫藥品에 대하여는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金融業과 不動產貨貸業에 대한 免稅여부는 큰 쟁점이 되었다. 附加價值稅는 利潤, 貸金, 利子, 貸料에 대한 과세이므로 理論上 金融業과 不動產貨貸業은 당연히 免稅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의 營業稅는 收益稅的 性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金融業과 不動產貨貸業에도 과세하고 있고 또 擔稅力이 큰 金融業이나 不動產貨貸業을 면세한다는 것은 課稅의 衡平에도 어긋나고 稅收의 損失을 자초하게 된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그리나 金融業에 대한 附加價值稅의 과세는 金融機關의 收支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金融機關으로부터 附加價值稅를 징수하더라도 企業의 附加價值稅에서 이를 공제하게 되어 稅收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金融業의 貸出利子는 附加價值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理論上 당연히 면세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밖에 外國의 예와 같이 金融業에는 課稅의 衡平上 附加價值稅대신 特別稅⁽³⁶⁾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不動產貨貸業에 대하여도 不動產貨貸業이 附加價值構成項目이기 때문에 당연히 면세되어

(36) 프랑스의 金融活動特別稅를 뜻하고 있었다.

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는 不動產賃貸業의 賃貸料는 대부분 店舖賃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不動產賃貸業에 附加價值稅를 부과하더라도 그 稅額은 賃借人の 買入稅額으로 공제되므로 稅收에 도움을 주지 못할 뿐더러 不動產賃貸料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는 데 그 이유가 있었다. 더우기 賃貸不動產建設에 대한 附加價值稅의 과세로 住宅價格의 상승이 염려되어 國民住宅에 대하여 附加價值稅를 면제할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實情이 있으므로 不動產賃貸業과 金融業과 같이 附加價值稅의 免除對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끝으로 農產物·畜產物·水產物·林產物의 免稅여부에 대하여도 논란이 있었다. 農水產業은 그 生產過程에서 中間投入物의 買入時에 附加價值稅를 부담하게 됨으로 이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마땅히 附加價值稅의 課稅對象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農水產業은 대부분이 소규모일 뿐만 아니라 農水產物이 食料品이어서 면세되며, 農漁民에게 附加價值稅納稅義務를 부과하게 되면 適應ability이 없어 오히려 혼란만 야기시키게 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農水產·畜產·林產物은 免稅對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끝으로 國家事業인 電話, 鐵道, 專賣事業에 대하여는豫算編成技術面에서 附加價值稅의 免稅對象으로 삼는 것이 좋다는 政府側 見解를 받아 드렸다.

(6) 納稅義務者의 範圍

納稅義務者를 營利目的의 事業者에 한정할 것인지 또는 營利目的을 불문하고 財貨 또는 用役을 공급·제공하는 者를 모두 納稅義務者로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었다. 課稅의 中立性을 지향하는 附加價值稅의 本質上 특정한 消費에 대하여 供給者の 목적에 따라 稅負擔의 차이를 둘 수는 없다. 그러나 公益法人이나 非營利法人의 事業은 公益事業이나 目的事業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實質辦償의 事業이고 그 종류도 다양함으로 이들을 納稅義務者로 할 경우 많은 租稅摩擦이 생겨 날 우려가 표명되었다.

그 반면에 非營利法人을 課稅對象에서 제외하면 價格의 歪曲이 생겨나 課稅의 中立性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결국 이 같이 상반되는 問題點을 결충하여 附加價值稅의 納稅義務者는 원칙적으로 營利性을 불문하고 계속적으로 財貨나 用役을 공급·제공하는 者를 모두 포함하되 非營利團體에 대하여는 특정한 경우를 열거(施行令에 규정)하여 한정적으로 免稅하도록 하는 결충안을 채택하였다. ⁽³⁷⁾

(37) 이 같은 것이 결국 운영상의 問題點을 남기게 되었다.

(7) 稅率構造

附加價值稅의 稅率의 높이는 稅收와 租稅抵抗에 直結되고, 稅率構造는 稅務行政의 단이와 資源分配의 효율 및 비효율을 결정짓게 된다.

租稅制度審議委員會의 심의에 부의된 政府案은 附加價值稅에 稅率을 單一稅率인 13%로 하되 政府가 上下 5%포인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彈力稅率制를 도입하고, 輸出에 대한 零稅率(zero rate) 적용으로 前段階까지 납부하였던 稅金을 金額 환급반도록 되어 있었다.

이 같은 政府案에 대한 反對論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³⁸⁾

첫째로, 13%의 稅率은 國民의 稅負擔을 과중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인하하여야 한다.

둘째로, 上下 5%포인트의 彈力稅率은 附加價值稅에 景氣調節機能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消費型 附加價值稅는 投資支出에 영향을 줄 수 없고 또 歲入構造의 下方硬直性을 고려할 때 稅率인하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여건에서 彈力稅率의 폭도 줄여야 한다.

세째로, 零稅率의 적용으로 輸出品에 대한 間接稅負擔을 100% 제거함으로써 輸出촉진에 기여할 수 있으나 輸出에 대한 還給額이 커질 수록 純稅收額은 줄어 들게 될 것이므로 零稅率때문에 附加價值稅의 稅率이 높아져 消費者의 逆進的 負擔이 늘어 나게 된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그밖에 零稅率적용과 같은 효과를 갖는 投資에 대한 附加價值稅의 全額還給도 投資對象을 구별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³⁹⁾

네째로, 附加價值稅에 單一稅率에서 생겨 나는 逆進的 負擔을 완화하기 위하여 附加價值稅의 稅率構造가 複數稅率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상과 같은 反對論에 대하여 政府案을 贊成하였던 견해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로, 제안된 13%의 稅率은 附加價值稅로 대체되는 舊稅의 稅收水準을 확보하는 데 필연한 稅率이며 附加價值稅의 도입이 稅收增大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둘째로, 彈力稅率을 두는 목적은 附加價值稅에 景氣調節機能을 갖게 하는 것과 稅收의 부족이나 과잉을 조절하는 데 있기 때문에 政府에 유입되는 截量權이 클 수록 伸縮性있는 政策決定을 할 수 있는 餘地도 크다고 할 수 있다.

(38) 附加價值稅에 관한 分科委員會의 討議와 審議에서 가장 많은 時間이 所要되고 激論이 있었던 것이 稅率에 대한 問題였다.

(39) 例컨데 生產的 投資에는 零稅率을 適用하며 遊興業所의 建物投資와 같은 非生產的 投資는 零稅率適用對象에서 除外하자는 主張이었다.

셋째로, 零稅率을 적용하는 것은 國際간의 貿易에 있어서 GATT協約에 의하여 間接稅의 課稅를 行先地 課稅原則(destination principle)에 따라 행함으로써 生產地國에서는 間接稅를 면제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零稅率의 적용은 輸出品에 대한 生產地國間接稅의 면제이지 補助金은 아니다. 또 設備投資에 대한 還給을 업종별 대상별로 구분하는 일은 行政負擔과 納稅協力費用을 다 같이 늘리게 될 우려가 있다.

넷째로, 複數稅率의 채택은 稅務行政上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租稅逋脫의 餘地를 확대하기 때문에 附加價值稅 負擔의 逆進性을 완화하는 일은 奢侈性物品이나 高級耐久性消費財 또는 高級娛樂施設場所의 入場 등에 重課하는 方法에 의존하는 것이 보다 낫다.

(8) 小規模事業者의 처리

연간 去來金額이 一定額 水準에 미달하는 小規模事業者에 대하여는 附加價值稅를 면제하는 방법과 附加價值稅의 一般課稅方法이 아닌 간편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우리나라營業稅下에서 이미 小規模事業者에 대하여 과세하여 왔기 때문에 課稅特例者 制度를 마련하여 營業稅와 같이 賣出額에 一定率을 곱하여 산출한 金額을 납부하도록 買入稅額의 공제는 용인하지 않는 課稅方式을 채택하는 것이 소망스럽다는 데 意見을 모았다⁽⁴⁰⁾.

나. 全體會議의 重要審議要旨

租稅制度審議案員會 第2分科案員會은 附加價值稅 도입에 관한 爭點에 대하여는 分科案員會로서의 結論을 내지 않고 租稅制度審議案員會 全體會議에 보고되었으며, 第2分科委員會의 贊反의 意見을 토대로 하여 다시 全體會議에서 爭點에 대한 심의가 계속되었다. 全體會議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政府에 진의하도록 확정된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新稅의 名稱

附加價值稅는 당초 「去來稅」란 假稱으로 그 試案이 작성되었으나 이 名稱이 誤解와 混亂을 일으킬 수 있다는 納稅制度審議會의 意見에 따라 「附加價值稅」로 고쳤다.⁽⁴¹⁾

(2) 附加價值稅法 制定의 基本方向

현행 營業稅 및 諸間接稅는 그 稅目도 많고 稅率도 복잡 다기하여 納稅者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累積課稅에 의한 中立性의 저해 및 國際競爭力의 약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으므로 政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유럽諸國에서 시행하고 있는 附加價值稅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여 왔다.

(40) 다만 課稅特例者의 年間去來金額은 但 營業稅의 自動賦課率限度인 1,5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見解가 지배적이었다.

(41) 附加價值稅導入當時의 稅制局長의 陳述이다.

本審議會에서도 그러한 事情을 감안하여 附加價值稅의 도입문제를 심의한 바 “財貨나 用役의 生產 또는 提供 및 流通의 모든 去來段階마다 企業이 附加하는 價值에 대하여 과세하는 一般消費稅로서의 稅額控除方式에 의한 附加價值稅의 도입이 우리나라에서는 필요하다”는 데 意見을 모았다. ⁽⁴²⁾

그리고 附加價值稅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현행 營業稅와 諸間接稅, 地方稅를 遊興飲食稅를 附加價值稅로 통합 대체하는 것이 理想的이라 하겠으나, 附加價值稅가 單一稅率로 운영될 것을 감안하여 奢侈品, 消費抑制品目 및 高價의 耐久性消費財 등에 대하여는 特別消費稅를 별도로 신설하여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高所得層에 重課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附加價值稅의 도입·시행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① 間接稅制를 대폭 간소화하여 納稅者의 편의를 圖謀한다.
- ② 租稅의 累積과 불필요한 企業의 垂直的 統合을 방지하고 資源分配의 歪曲등의 제거에 위하여 間接稅制의 中立性을 확립한다.
- ③ 輸出과 投資財에 대한 間接稅負擔의 배제로 輸出 및 投資를 촉진한다.

(3) 附加價值稅로 대체할 間接稅의 範圍⁽⁴³⁾

附加價值稅는 다음 9개 稅目과 대체하되 奢侈品, 消費抑制品 및 高價의 耐久性消費財 등에 대하여는 特別消費稅를 별도로 과세함으로써 單一稅率로 운영될 附加價值稅를 보완하도록 한다.

代替할 稅目은 營業稅, 物品稅, 織物類稅, 石油類稅, 電氣ガス稅, 電話稅, 通行稅, 入場稅, 地方稅중 遊興飲食稅로 한다.

(4) 우리나라가 채택할 附加價值稅의 類型

附加價值稅는 課稅標準을 기준으로 할 때 (1) 消費型 (2) 所得型 (3) 生產型으로 나누어지고, 課稅方法은 (1) 稅額控除法 (2) 去來額控除法 (3) 加算法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消費型 附加價值稅는 E C諸國이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서 最終支出을 과세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다른 형태에 비하여 租稅收入이 안정적이고 또 企業의 投資에 대하여는 租稅의 負擔이 없기 때문에 經濟成長政策에 적합한 課稅類型이 된다.

그리고 課稅方法은 去來할 때마다 附加價值稅를 징수하되 納稅義務者가 징수한 稅額, 즉

(42) 租稅制度審議委員會, 『稅制改革에 관한 審議報告書』, 1976, pp. 50-51.

(43) 租稅制度審議委員會, 『稅制改革에 관한 審議報告書』, 1976, pp. 51-52.

賣出稅額에서 정수당한 稅額(買入稅額을 공제한 나머지 稅額)을 政府에 납부하도록 하는 稅額控除方式이 脱稅의 방지, 自進納付制度의 확립에 적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稅額控除方式에 의한 消費型附加價值稅가 우리나라의 與件 및 經濟政策에 적합한 制度이므로 租稅制度 審議案員會는 이 類型을 채택하자는 데 意見을 모았다.

(5) 稅率⁽⁴⁴⁾

多段階로 되어 있는 현행 營業稅率 또는 間接稅率을 감안하거나 혹은 基本生活必需品에 대하여는 輕減稅率을, 그리고 奢侈品 등 특정 財貨나 用役에 대하여는 加重稅率을 적용하여 附加價值稅의 逆進性을 완화하고 國民的 合意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附加價值稅를 複數稅率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意見도 있었다.

그러나 複數稅率에 의하여 附加價值稅制를 운영할 경우 行政的으로도 복잡성을 초래할 것은 물론 단순히 모든 販賣를 합계한 것에서부터 모든 買入을 합계한 金額을 차감한 金額에 따라 간단히 稅額을 계산하거나 검산할 수가 없다. 또한 稅率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還收效果(catching-up effect)는 立法者의 의도와 달리 附加價值稅의 負擔이 변동되는 불합리한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더우기 현재 시행되고 있는 綜合所得稅制가 복잡하여 納稅者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間接稅制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單一稅率에 의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데 意見을 모았다.⁽⁴⁵⁾

그리고 免稅對象品目도 中間投入物에 과하여진 附加價值稅는 부담하여야 하므로 輕減稅率로 課稅되는 것과 같은 效果를 가져오며, 特別消費稅 課稅品目은 附加價值稅에 추가하여 高率로 과세되기 때문에 加重稅率로 과세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附加價值稅는 單一稅率이라도 실제로 있어서는 輸出品에 대한 零稅率, 基礎生活必需品에 대한 免稅, 즉 輕減稅率, 奢侈品 등에 대한 特別消費稅率 즉 加重稅率이 적용되는 4개의 複數稅率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附加價值稅의 稅率水準은 대체되는 營業稅 및 諸間接稅의 稅收와 동일한 稅收를 확보할 수 있는 稅率水準이 되어야 하지만 彈力稅率의 도입은 景氣調節機能을 위하여 그 필요성을 認定하되 그 效用性은 극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直接稅와 附加價值稅중 어떠한 稅目에 장치하느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少數意見이 제시되었다.⁽⁴⁶⁾

(44) 附加價值稅의 稅率에 대하여는 彈力稅率을 포함하여 全體會議에서는 그 具體的 稅率의 높이에 대하여 審議를 하지 않고, 稅率決定의 方向만을 審議하였다.

(45) 租稅制度審議委員會, 『稅制改革에 관한 審議報告書』, 1976, pp. 54-55.

(46) 少數意見이었으나 多數意見과의 實質的 差異는 근소하였다.

(6) 零稅率 適用

零稅率은 賣出額에 零의 稅率을 適用하여 稅額을 계산함으로써 買入時 부담한 모든 附加價值稅額을 自動還給받게 되는 完全 免稅制度이므로 居住者나 內國法人에 한하여 輸出하는 財貨와 船舶·航空機에 의한 外國行 用役과 기타 外貨를 획득하는 財貨와 用役에 대하여만 零稅率을 適用하도록 하여 輸出을 촉진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當面課題인 國際收支改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데 意見을 모았다.

(7) 免稅

附加價值稅의 免稅對象은 庶民生活에 미치는 영향과 公益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결정하되 一般消費稅로서의 附加價值稅의 장점을 훼손시키지 않고 또한 租稅 衡平을 기하기 위하여 가능한 그 범위가 축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 課稅된 物品을 면세한 후 다음 단계에서 다시 과세하면 免稅效果가 상실되므로 免稅對象의 선정에 있어서는 最終消費製品에 한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데 意見을 모았다.

租稅制度審議委員會 全體會議에서 개별적으로 審議 확정한 免稅對象을 國內去來에 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基礎食料品
- ② 水道물과 煤炭 및 無煤炭
- ③ 醫療保險用役과 默醫師의 用役
- ④ 教育·保險用役
- ⑤ 圖書·新聞·雜誌·放送
- ⑥ 勤勞用役·金融用役·不動產用役
- ⑦ 郵票·印紙·證紙·福券
- ⑧ 辯護士·會計士·稅務士 등의 自由職業用役
- ⑨ 專賣品
- ⑩ 文化 및 아마추어 스포츠行事와 藝術作品
- ⑪ 圖書館·博物館·美術館·動物園·植物園 등의 入場
- ⑫ 旅客運送 중 市內버스·鐵道·地下鐵·沿岸 및 島嶼의 海上 旅客運送
- ⑬ 國家·地方自治團體에 무상으로 기증되는 財貨.

(8) 稅金計算書

현재 시행하고 있는 標準計算書의 作成·交付制度를 보완하여 去來時마다 모든 事業者가 稅金計算書를 충실히 作成·交付하도록 하여 附加價值稅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고 稅金計算書를 성실하게 비치한 事業者에 대하여는 實地調查 등 稅務干涉을 배제하도록 하고, 稅金計算書를 비치하지 아니한 買入에 대한 買入稅額 공제는 용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意見을 모았다.

最終消費者와 직접 去來되는 소규모의 事業者(小賣品, 飲食店業, 宿泊業, 沐浴·理髮·美容業, 旅客運送業 등)와 入場券을 발행하는 경우 또는 金錢登錄機 設置者에 대하여는 一般事業者에게 作成·交付하게 하는 稅金計算書보다 더 간편하게 작성·교부할 수 있게 하는 簡易稅金計算書를 稅金計算書에 잘음하여 작성·교부하도록 함으로써 小規模事業者들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데 意見이 일치되었다.

(9) 課稅期間

課稅期間은 현행 營業稅와 같이 6個月로 하되 현재 每月마다 申告・納付하게 되어 있는 諸間接稅 및 源泉稅등을 감안하여 2개月마다 豫定申告 納付를 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는 데 意見을 모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매월 신고・납부하여야 할 納稅者의 불편을 덜어 주고 稅負擔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國庫收入의 平準化를 기할 수 있고 또한 課稅期間의 長期에 따른 課稅去來 事實의 일탈도 방지할 수 있다는 데 意見이 모아졌다.

(10) 個人小規模事業에 대한 課稅特例

연간 去來金額이 一定額미만인 個人 小規模事業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附加價值稅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行政上의 복잡성만이 아니라 事業者에게도 記帳能力의 미숙, 租稅認識의 부족때문에 어려움을 주게 될 것이므로 이를 小規模事業者에 대하여는 현행 營業稅制度와 같이 賣出額에 一定率을 곱하여 稅額을 계산하는 外形課稅制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意見을 모았다.

다만 그 稅負擔이 附加價值稅에 의하여 과세받는 경우와 동일한 負擔이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11) 施行日

政府는 당초 附加價值稅制를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발표하였으나 附加價值稅制의立案・審議過程에서 드러난 여러가지 難題의 해결과 景氣動向 등을 고려하여 附加價值稅制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租稅制度審議案員會의 多數意見을 받아 들여 “經濟與件의 추이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행을 연기할 수 있다”는 留保條件를 채택하였다.⁽⁴⁷⁾

5. 經濟界의 反應과 意見

租稅制度審議案員會에 經濟界의 代表를 참여시키지 않았던 것은 租稅制度審議委員會가 中立性을 지켜야 한다는 단순한 理由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租稅制度審議委員會가 稅制改革案을 심의하는 기간중 여러차례에 걸쳐 經濟界的 代表를 초청하여 經濟界的 意見을 청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各界에서 제안된 建議事項도 면밀히 검토하였다.

한국의 代表的인 企業家團體인 全國經濟人聯合會는 1976년 3월에 「附加價值稅制의 導入方向에 관한 研究」이란 研究資料를 발간하여 附加價值稅制導入의 문제점과 전제로서 12개

(47) 당시 租稅制度審議委員의 回顧에 의거하고 있다.

項目⁽⁴⁸⁾에 걸쳐 全國經濟人聯合會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 될 수 있다.

(1) 附加價值稅導入의 合理性 및 與件成熟問題

間接稅置重을 구체화할 附加價值稅導入의 政策的合理性 및 그 必要性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는 賣上稅制의 경험이 없고, 內國稅의 直間接稅比率이 1976년도에 이미 37.3 : 62.7에 달하고 있어 附加價值稅가 最終消費者에게 완전 전가된다는 것과 그 負擔의 逆進性問題나 이를 보완할 所得稅制의 개편 및 社會福祉水準의 미흡 등 미해결의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뿐만 아니라 附加價值稅의 도입에는 일정한 水準 이상의 記帳能力과 租稅意識의 개선, 稅金計算書(tax invoice)의 원활한 수수 그리고 流通構造·段階의 명확화 및 개선조치 등이 아울러 강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므로 이러한 여러가지 과제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附加價值稅導入與件이 얼마나 성숙되었으며 또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연구·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2) 附加價值稅 도입時期의 積中화

附加價值稅의 도입여건이 성숙되고, 제도적인 보완이 완료되더라도 그 導入時期는 物價上昇壓力을 배제하기 위해 景氣回復期를 피해야 한다. 그리므로 附加價值稅制 실시時期는 그 구체적 일정을 大統領令(the Presidential Decree)에 위임하는 것이 좋다.

(3) 所得稅制의 改編

附加價值稅導入의 전제조건으로 社會保險制度의 강화와 함께 所得稅의 負擔輕減을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人的 控除項目의 확대 및 控除限度의 인상, 각종 費用控除의 용인, 紿與所得에 대한 課稅最低限의 상향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4) 物價構造의 再編成

附加價值稅의 도입에 따라 價格形成要素를 분할하여 製品의 價格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 즉 總累積附加價值와 附加價值稅額 그리고 그 合計額을 나누어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告示價格, 最高價格, 協定價格에도 큰 수정이 가하여져야 한다.

(5) 景氣補整機能의 補完

附加價值稅制는 구조적으로 租稅의 自動的 景氣課節機能이 다른 租稅에 비하여 약하기 때문에 彈力稅率制度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直接稅에도 稅率에 대한 彈力稅率制를 적용하고 勤勞所得에 대한 indexation 制度의 도입이 소망스럽다.

(48) 全國經濟人聯合會, 『附加價值稅制의 導入方向에 관한 研究』, 研究資料 第18輯(1976. 3), pp. 83-106.

(6) 課稅對象選定의 合理化

基本生計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遊興飲食行爲, 飲食物, 生必品 등에 대한 附加價值稅의 特別措置(免稅나 輕減稅率적용)이 있어야 하고 理容業이나 沐浴業 등도 免稅조치를 하여야 한다.

(7) 地方稅制 改編의 效率化

政府構想에 의하면 附加價值稅 對象稅目에 地方稅中에서 遊興飲食稅와 馬券稅가 포함될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로 인한 稅收缺陷이 既存 地方稅에 전가되지 않도록 새로운 稅源의 개발, 課稅標準의 현실화, 稅務行政의 능률화 등이 추구되어야 한다.

(8) 複數稅率制度의 도입 검토

附加價值稅 도입에 따른 일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附加價值稅率 構造를 標準稅率 10%, 輕減稅率 약 2~3% 정도, 割增稅率 약 15% 정도 등 3段階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附加價值稅制의 실시를 단계화한다는 데에도 그意義가 있으나 附加價值稅制를 보완할 社會保障制度가 아직은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9) 稅務送狀(tax invoice) 制度의 開發

附加價值稅를 도입하는 소기의 成果를 얻기 위해서는 去來에 수반하는 稅務送狀의 수수를 生活化할 수 있는 계몽 등 여건조성과 함께 稅務送狀의 作成·發行을 간편화하고 外上去來 등 각종 去來를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送狀의 發行매수는 2매정도로 간소화하는 것이 좋다.

(10) 政府推計課稅制에 대한 政策決定

附加價值稅制의 도입·실시에 앞서 政府推計課稅制의 심화를 막는 制度開發이 이루어져야 한다.

(11) 投資에 대한 附加價值稅적용의 效率화

投資를 촉진하기 위해 投資가 완료되는 時點을 기준으로 즉시 全額還給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2) 導入時期의 신중화와 啓導의 철저

附加價值稅制導入의 必要性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그 導入·實施時期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를 거치고, 충분한 지도 및 계몽기간을 가져야 한다. 한편 실시에 앞서 稅務公務員의 만족할만한 訓練과 事例中心의 폭넓은 홍보활동이 전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全國經濟人聯合會는 1976년 9월에 政府가 附加價值稅導入을 골자로 하는 稅制改革

要綱을 발표하자 동년 9월 6일자로 稅制改革案에 대한 補完建議⁽⁴⁹⁾를 하였다. 그 중 附加價值稅에 관련된 建議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금반 稅制改革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附加價值稅制는 諸間接稅의 통합을 통한 稅制運營의 간소화 및 輸出·投資의 촉진 등 일용 그 나름대로의 政策效果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2) 그러나 稅率을 13%로 한 것은 上·下 5%포인트 범위 내에서 調整시행(최고 18%, 최저 8%) 할 수 있는 弹力稅率과 관련시켜 볼 때 자칫하면 최종 一般消費者의 負擔加重으로 家計를 압박하고 物價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하겠고, 稅金計算이 복잡하여 附加價值稅制의 용이한 운용을 저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稅率은 당초의 政府構想案대로 10%로 할 것이 요망된다.

(3) 한편 施行時期에 있어서는 附加價值稅本法, 동施行令, 동施行規則 및 準則, 細部 運營要綱 등 필요한 모든 運用體系가 완료된 때를 기점으로 하여 公務員訓練, 納稅者의 계몽 등 약 1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친 다음에 시행토록 할 것이 요망된다.

한편 大韓商工會議所도 1976년 9월에 1976년 稅制改革案에 대한 建議를 政府에 제출하였다. 그 중 附加價值稅에 관련된 建議內容은 다음과 같다.⁽⁵⁰⁾

(1) 附加價值稅의 弹力稅率의 범위를 上下 5%포인트에서 上下 3%포인트로 줄여야 한다.

그理由로서는 附加價值稅의 弹力稅率의 幅이 上下 5%포인트일 경우 行政當局이 10%幅의 裁量權을 갖게되는 바 이는 租稅法定主義에 비추어 볼 때 약간 과도한 감이 있으며, 租稅의 景氣調整機能은 지나되 行政裁量의 範圍를 어느 정도 경계하기 위해서는 弹力稅率의 幅을 上下 3%포인트정도로 축소해야 한다.

(2) 小企業 特例基準額을 인상하고 外形課稅 2%를 1.5%로 인하하여야 한다.

그理由로서는 현재 自動賦課率 적용 對象業體의 기준이 연간 外形去來額 1,500萬원線에 있는 것을 감안할 때 附加價值稅法에서 小企業의 外形基準을 1,200萬원으로 책정한 것은 均衡이 맞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또한 이들 小企業에 대해 현행 營業稅와 같이 外形課稅 2%를 적용한다는 것은 零細企業의 稅負擔을 경감하는 방향과 상치되는 것이며 營業稅의 平均稅率 1.5%에 비하여 보더라도 높은 水準이 된다.

(3) 景氣調節을 위한 弹力稅率의 運用에 대해 好況·不況의 判斷基準을立法化하거나 安

(49) 全國經濟人聯合會, 『全經聯』, 全經聯月報(1976. 10) pp. 50-53.

(50) 大韓·서울商工會議所, 『76稅制改革案에 대한 建議』(稅制部會 및 稅制委員會連席會議資料, 1976. 8. 31).

全裝置를 制度化할 필요가 있다. 政府의 稅制改革案에 의하면 附加價值稅는 標準稅率 13%를 중심으로 가감 5%포인트를, 特別消費稅는 基本適用稅率을 중심으로 가감 30%를 景氣動變의 상황에 따라 行政府의 裁量에 의해 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行政裁量權의 지나친 擴大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安全裝置로서 好・不況의 判斷基準을立法化하거나 國會에 대한 事後報告制 또는 事後承認制를 도입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4) 附加價值稅의 稅金計算書에 대한 租稅犯處罰規定을 완화하여야 한다.

改革案에 의하면 稅金計算書를 허위 또는 조작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내지 세액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附加價值稅가 완전히 토착화하기까지 體刑罰을 보류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財產刑 내지 行政罰(加算稅)로만 규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밖에 經濟專門家들의 제언은 다음과 같았다.

(1) 附加價值稅의 도입에 따른 稅負擔의 逆進性과 低所得層의 稅負擔過重問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直接稅部門에 있어서 所得再分配機能의 강화와 함께 教育・醫療費의 경감 등 中・低所得層을 대상으로 하는 社會保障制度가 먼저 확립되어야 한다. 附加價值稅의 도입으로 증가되는 稅收의 대부분을 醫療시혜의 확대 등으로 低所得層에 還給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2) 附加價值稅는 勞動集約的인 中心企業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이는 附加價值의 구성요소인 賃金部分에도 附加價值稅가 부과되기 때문에 附加價值構成에서 人件費의 비중이 높은 勞動集約的인 產業은 불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더욱이 中心企業의 경우 過當競爭때문에 消費者가 부담하여야 할 間接稅도 轉嫁시키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러므로 勞動集約的인 中心企業에 대하여는 附加價值稅의 도입과 함께 直接稅의 감면 등 특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3) 附加價值稅의 物價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中小企業의 適應能力不足에서 오는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附加價值稅制의 실시를 2~3년 연기하더라도 納稅者 및 擔稅者에 대한 弘報教育과 함께 經濟安定이 이루어지는 時期를 백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附加價值稅의 도입에 대하여는 經濟界도 導入與件이 成熟되지 못한 것이 큰 問題라고 보기는 하였으나 附加價值稅의 도입 자체는 反對하지 않았다. 이는 大企業의 경우 附加價值稅의 도입이 불필요한 稅務干涉을 배제할 수 있고 輸出 및 投資에 대한 全額還給으로 오히려 유리하게 될 것을 期待하였던 테 그 理由가 있다고 할 수 있다. 小規模事業者인 경우 課稅特例者로 과세될 때 舊營業稅와 다를 바가 없고 附加價值稅의 실시로 課稅對象이 확대되고 음폐되었던 稅源이 양성화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보면 認定課稅의 폐단이 줄어 들

게 될 것을 기대하였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6. 國會에서의 審議⁽⁵¹⁾

1976년 10월 28일에 개최된 제96회 國會 제12차 財務委員會에서 財務部長官은 附加價值稅法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였고, 專門委員의 檢討보고가 있었다. 이어 1976년 10월 29일 제14차 財務委員會에서는 野黨의 附加價值稅法案 修正案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그 要旨는 다음과 같았다.

(1) 物價가 安定되지 못하고 있는 현 時點에서 附加價值稅의 實시는 物價를 대폭 상승시키고 經濟界에 일단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附加價值稅法을 제정하더라도 최소한 1년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記帳能力의 미비나 領收證 수수의 慣行化가 되어 있지 않는 것도 實施延期의 이유가 된다.

(2) 附加價值稅의 基本稅率은 10%로 내리고 彈力稅率도 上下 3%포인트로 인하한다. 基本稅率을 10%로 인하하여야 할 理由는 附加價值稅와 特別消費稅로 대체될 8개 稅目的稅收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稅率水準이 10%라는 데 있다.

(3) 零稅率 적용범위에 內國信用狀에 의한 財貨의 供給을 포함시켜 輸出寄與에 대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

(4) 一般免稅對象에 鎳產物과 中古品을 포함시켜야 한다. 鎳產物을 免稅對象에 포함시키는 것은 地下資源開發에 대한 誘因을 주는데 그 目的이 있고 中古品에 대한 免稅는 二重課稅를 회피하려는 데 그 目的이 있다.

(5) 課稅特例範圍를 營業稅法上の 自動賦課率 適用限度 1,500萬원과 物價上昇을 고려하여 2,000萬원으로 인상하고 適用稅率은 營業稅의 平均稅率인 1.5%로 인하한다.

(6) 小額不徵收限度를 政府案 7,500원 (6개월)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

(7) 附加價值稅 시행초기에는 加算稅를 줄여야 한다.

이어 제23차 財務委員會(1976년 11월 13일)에서 法案審查小委員會가 法案審查結果를 보고할 때까지 財務委員會에서 附加價值稅法案을 놓고 論議가 계속되었다. 與野議員間에 논의의 爭點이 되었던 것은 (1) 附加價值稅의 實시가 時期尚早라는 것 (2) 基本稅率 13%가 과다하다는 것 (3) 附加價值稅의 도입에 따른 物價上昇과 經濟混亂문제 등이 있으며 財務委員會에서는 두가지 内容이 수정되었다.⁽⁵²⁾ (1) 彈力稅率을 上下 5%포인트에서 上下 3%포인트로 인하하고 (2) 個人에 대한 未登錄 未檢閱加算稅率을 政府案 2%에서 1%로 인하

(51) 『第96回 國會 財務委員會會議錄』, 第12號(1976. 10. 27)~第23號(1976. 11. 13), 本會議會議錄 第13號(1976. 11. 29).

(52) 『第96回 國會, 第23次 財務委員會 會議錄』(1976년 11월 13일) p. 2.

하고, 稅金計算書 未提出加算稅를 2%에서 1%로, 稅金計算書遲延提出加算稅를 1%에서 0.5%로 각각 인하하였다.

附加價值稅法案은 財務委員會에서 與野間에 완전히 합의를 보지 못하였던 관계로 제13차本會議 (1976年 11월 29일)에 상정되어 與野의 贊反討論을 거쳐 表決에 부쳐졌으나 在席 176人중 可 128 否 47로서 財務委員會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政府原案대로 가결되었다. ⁽⁵³⁾

7. ‘에필로그’

附加價值稅의 도입으로 1971년 말 稅制改革에서 설정된 長期稅制發展의 目標는 그 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일단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稅制의近代化를 위한 새로운挑戰의 첫 출발에 불과하였다.

政府는 이미 1976년 9월에 附加價值稅 施行審議委員會를 설치하여 財務部 稅制當局과 國稅廳이 중심이 되어 附加價值稅 施行基本計劃을 수립한 바 있었다. 이어 附加價值稅法 제정후에는 政府와 民間代表를 망라하여 財務部에 附加價值稅 對策委員會를 설치하여 附加價值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물론 施行令 施行規則의 試案도 심의하게 하였다. 또한 附加價值稅 施行準備計劃에 따라 稅務公務員에 대한 教育, 弘報, 豫行演習, 物價指導, 國稅廳의 機構整備 등이 이루어졌고 당초의 計劃대로 6개月間의 教育 및 弘報活動 끝에 1977년 7월 1일부터 附加價值稅가 시행되었다. 다만 이에 앞서 附加價值稅의 시행이 物價 및 經濟動向에 불리한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政府는 1977년 6월 13일에 附加價值稅의 彈力稅率을 적용하여 시행稅率을 10%로 인하하였다. ⁽⁵⁴⁾

(53) 『第92回 國會, 第13次 本會議(1976년 11월 29일) 會議錄』, p. 20.

(54) 附加價值稅의 施行 2일 前에 政府는 233개 品目의 消費者價格引下를 발표하였다.